[제 8 호 안건] 제 7 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						
일시	2022년 12월 27일	실(화) 징	·소	학부모상주실	제안자	교무부장
심의안건	건 2022학년도 함현초 학교규칙 개정안					
심 의 내 용						

1. 제안이유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본교학교규칙에 기재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17621(2022.10.28.)호

3. 주요 내용

	현재 학칙	학칙 개정안	
학칙 기재 사항	없음	제 30 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비고	※ 위 관련공문에 의거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르되,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는 제외함		

붙임 함현초 학교규칙 개정안(2022.12.30.개정) 1부.